

제253회 거창군의회 정례회

제2차 본회의 (2020.12.11.)

조례안 · 일반의안 심사 보고서



거창군의회
[산업건설위원회]

목 차

1	거창군 거창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-----	1
2	거창군 거창 향노화힐링랜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	6
3	거창군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 조례안 -----	10
4	거창군 맞춤형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	20
5	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단 사무국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	29
6	공용건축물(가조119안전센터) 증축 동의안 -----	33
7	거창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-----	36

**거창군 거창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**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- 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20. 12. 1, 이재운 의원 등 11명
- 나. 회부일자 : 2020. 12. 1.
- 다. 상정일자 : 제253회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
(2020. 12. 9. 상정·의결)

2. 제안설명의 요지 [제안설명자 : 이재운 의원]

가. 제안이유

항노화 힐링랜드 등 거창군 관광지의 입장료 징수에 따라 거창사랑 상품권 소액권 제작을 통해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

나. 주요내용

- 거창사랑상품권 종이형 권면 금액 추가(안 제3조제2항)
 - 1,000원권
 - 2,000원권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(전문위원 신순화)

- 본 조례안은 향노화 힐링랜드 등 거창군 관광지의 입장료 징수에 따라 거창사랑상품권 소액권 제작을 통해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

- 주요내용은
안 제3조제2항에서 거창사랑상품권 종이형 권면 금액(1,000원권, 2,000원권)을 추가하는 것입니다.

- 검토의견으로는
 - 「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 제4조(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)에서는 “지역사랑상품권의 종류, 권면금액, 기재사항 등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”라고 규정하고 있음.

 - 본 조례안을 통해 거창사랑상품권 소액권 제작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 됨.

- 조례와 관련한 형식과 체계상의 문제점,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기재생략

5. 토론요지 : 없음

6. 수정안 요지 : 없음

7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8. 소수의견 요지 : 없음

9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붙임 거창군 거창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거창군 조례 제 호

거창군 거창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거창군 거창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2항제1호·제2호를 제3호·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·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. 1,000원권
2. 2,000원권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구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안
<p>제3조(거창사랑상품권의 발행) ① 거창군수(이하 “군수”라 한다)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거창사랑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다.</p> <p>② 「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4조 제4항에 따라 거창사랑상품권의 종류는 종이형, 카드형(전자적 방식의 발행을 포함한다) 및 모바일로 하고, 종이형의 권면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<u><신 설></u>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<u><신 설></u></p> <p>1. 5,000원권</p> <p>2. 10,000원권</p> <p>③ (생략)</p>	<p>제3조(거창사랑상품권의 발행) ① 거창군수(이하 “군수”라 한다)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거창사랑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다.</p> <p>② 「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4조 제4항에 따라 거창사랑상품권의 종류는 종이형, 카드형(전자적 방식의 발행을 포함한다) 및 모바일로 하고, 종이형의 권면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 <u>1,000원권</u></p> <p>2. <u>2,000원권</u></p> <p>3. 5,000원권</p> <p>4. 10,000원권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

**거창군 거창 향노화힐링랜드 운영 조례
일부개정조례안**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- 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20. 12. 1, 권재경 의원 등 11명
- 나. 회부일자 : 2020. 12. 1.
- 다. 상정일자 : 제253회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
(2020. 12. 9. 상정·의결)

2. 제안설명의 요지 [제안설명자 : 권재경 의원]

가. 제안이유

거창 향노화 힐링랜드 입장료를 타 시군의 입장료 수준에서 적정하게 설정하고, 입장료 일부를 거창사랑상품권 또는 지역 특산물로 되돌려 줌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함

나. 주요내용

○ 입장료 변경(안 별표1)

구분	요금	적용
일반	3,000원	만 7세 이상 만 65세 미만
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이미 징수한 입장료 중 일부 금액을 거창사랑 상품권 또는 지역 특산물로 되돌려 줄 수 있다.		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[전문위원 신순화]

- 본 조례안은 거창 향노화 힐링랜드 입장료를 타 시군의 입장료 수준에서 적정하게 설정하고, 입장료 일부를 거창사랑상품권 또는 지역 특산물로 되돌려 줌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
- 주요내용은 안 별표1 입장료를 변경하는 것입니다.

구분	요금	적용
일반	3,000원	만 7세 이상 만 65세 미만
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이미 징수한 입장료 중 일부 금액을 거창사랑상품권 또는 지역 특산물로 되돌려 줄 수 있다.		

○ 검토의견으로는

- 「산림문화·휴양에 관한 법률」 제21조의5(자연휴양림등의 입장료 등의 징수)에서는 “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자연휴양림 등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”라고 규정하고 있으며,
- 「산림문화·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9조의7(자연휴양림 등의 이용료)에서는 해당 자연휴양림등이 소재하는 시·군·구에 거주하는 사람 등 자연휴양림등의 입장료 면제에 대한 사항과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자연휴양림등의 입장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.

- 입장료를 현실에 맞게 반영하고, 이미 징수한 입장료 중 일부 금액을 거창사랑상품권 또는 지역 특산물로 되돌려 줌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 됨.
- 조례와 관련한 형식과 체계상의 문제점,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기재생략

5. 토론요지 : 없음

6. 수정안 요지 : 없음

7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8. 소수의견 요지 : 없음

9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붙임 거창군 거창 향노화힐링랜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거창군 조례 제 호

거창군 거창 향노화 힐링랜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거창군 거창 향노화 힐링랜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1 중 1. 입장료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구분	요금	적용
일반	3,000원	만 7세 이상 만 65세 미만

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이미 징수한 입장료 중 일부 금액을 거창사랑 상품권 또는 지역 특산물로 되돌려 줄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거창군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

1. 심사경과

- 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20. 11. 24, 이재운 의원 등 11명
- 나. 회부일자 : 2020. 12. 1.
- 다. 상정일자 : 제253회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
(2020. 12. 9. 상정·의결)

2. 제안설명의 요지 [제안설명자 : 이재운 의원]

가. 제안이유

농번기에 가사와 농업을 병행하는 농업인의 일을 덜어주고, 농업인의 건강증진과 농업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

나. 주요내용

- 조례의 목적 및 정의(안 제1조 ~ 제2조)
- 책무(안 제3조)
 - 군수는 농번기 마을 공동급식을 위하여 행정적·재정적 지원
 - 마을대표는 신선한 식재료를 활용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음식이 준비될 수 있도록 노력

- 지원대상(안 제4조)
마을공동급식을 희망하는 마을 중 마을당 농업인 20명 이상 참여하는 마을
- 지원기간(안 제5조)
 - 상반기(4월~6월), 하반기(9월~11월) 기간 중 시행
 - 재배품목, 운영실정 등 마을의 여건에 따라 변경 가능
- 지원범위(안 제6조)
조리인력 인건비, 식재료 구입비, 가스비 등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
- 사업신청 및 지원결정(안 제7조 ~ 안 제8조)
- 완료보고 및 지도감독(안 제9조 ~ 안 제10조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[전문위원 신순화]

- 본 조례안은 농번기에 가사와 농업을 병행하는 농업인의 일을 덜어주고, 농업인의 건강증진과 농업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
- 주요내용은
 - 안 제1조 ~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 및 정의
 - 안 제3조에서 책무(군수, 마을대표)
 - 안 제4조에서 지원대상
 - 안 제5조에서 지원기간
 - 상반기(4월~6월), 하반기(9월~11월) 기간 중 시행
 - 재배품목, 운영실정 등 마을의 여건에 따라 지원기간 변경 가능
 - 안 제6조에서 지원범위
조리인력 인건비, 식재료 구입비, 가스비 등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

- 안 제7조 ~ 안 제8조에서 사업신청 및 지원결정
- 안 제9조 ~ 안 제10조에서 완료보고 및 지도감독 등을 정하였습니다.

○ 검토의견으로는

- 「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 제4조(국가·지방자치단체 및 농업인·소비자 등의 책임)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, “농업 인력 육성, 농업인과 농촌주민의 소득안정, 삶의 질을 향상 시키기 위하여 종합적인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.”라고 규정하고 있으며,
- 또 지방재정법 제17조(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)에서 지방자치 단체는 그 소관 사무와 관련하여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인 또는 법인·단체에 기부·보조, 그 밖의 공급 지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, 이 경우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 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음.
- 본 조례안을 통해 농번기에 가사와 농업을 병행하는 농업인의 일을 덜어주고, 농업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 됨.

- 조례와 관련한 형식과 체계상의 문제점,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기재생략

5. 토론요지 : 없음

6. 수정안 요지 : 없음

7. 심사결과 : **원안가결**

8. 소수의견 요지 : 없음

9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붙임 거창군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 조례안

거창군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농번기에 가사와 농업을 병행하는 농업인의 일을 덜어주고, 농업인의 건강증진과 농업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농번기 마을 공동급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"농업인"이란 「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 제3조 제2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.

제3조(책무) ① 거창군수(이하 “군수”라 한다)는 농번기 마을 공동급식(이하 “마을 공동급식”이라 한다)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② 마을대표(마을의 이장, 부녀회장 등을 말한다. 이하 같다)는 마을공동급식을 가급적 신선한 식재료를 활용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음식이 준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4조(지원대상) 지원대상은 마을공동급식을 희망하는 마을 중 마을당 농업인 20명 이상 참여하는 마을로 한다.

제5조(지원기간) ① 농업인 마을공동급식은 상반기(4월~6월), 하반기(9월~11월) 기간 중 시행되는 공동급식에 한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배품목, 운영실정 등 마을의 여건에 따라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.

제6조(지원범위) 군수는 마을공동급식에 필요한 조리인력 인건비, 식재료 구입비, 가스비 등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제7조(사업신청) 마을공동급식을 하고자 하는 마을대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1.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 사업 신청서(별지 제1호서식)
2.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 사업 참여자 명단(별지 제2호서식)

제8조(지원 결정) ① 군수는 제7조의 사업신청에 따른 마을공동급식 대상마을 선정, 지원규모 등을 결정하고, 이를 마을대표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결정기준 및 통보절차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.

제9조(완료보고) 마을대표는 마을공동급식을 완료한 경우 마을공동급식 일지, 공동급식 사진, 사업비집행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제10조(지도·감독) ① 군수는 마을대표가 신선한 식재료를 활용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음식을 제공하고 성실히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도·감독하여야 한다.

② 군수는 마을대표가 제9조의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당초 목적을 불성실하게 추진할 경우 보조금의 지급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, 이미 지급한 보조금을 회수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【별지 제1호서식】

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 사업 신청서

1. 신청인(마을대표)

가. 성명: (생년월일:)
나. 주소: (연 락 처:)

2. 마을 현황

마을명	거주현황		공동급식 참여 인원					
	농가(호)	인원	계	시설·원예	과수	수도작	축산	그 밖에
			명					

○ 참여비율: 퍼센트(마을전체 인구 대비 참여 인원비율)

3. 급식계획

가. 급식장소: (위 치:)
나. 조리인력 성명: (연락처:)

4. 총 사업비: 천원

가. 조리인력 인건비: 천원
나. 식재료 구입비: 천원
다. 그 밖의 경비: 천원

- 붙임 1. 사업계획서 1부.
2. 농번기 마을공동 급식 참여자 명단 1부.

위와 같이 농번기 마을공동 급식지원 사업을 신청합니다.

20 . . .

신청인(마을 대표): (인)

거창군수 귀하

거창군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

1. 사업개요

- 농번기에 가사와 농업을 병행하는 농업인의 일을 덜어주고, 농업인의 건강증진과 농업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

2. 비용발생 요인

- 마을공동급식 조리인력 인건비, 식재료 구입비, 가스비 등

3. 관련 조문

- 안 제6조(지원범위)
 - 군수는 마을공동급식에 필요한 조리인력 인건비, 식재료 구입비, 가스비 등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4. 비용 추계결과

- 가. 재정수반요인 : 조리인력 인건비, 식재료 구입비, 가스비 등
- 나. 추계의 전제 : 2020년도 지원 사업비 기준 추정
- 다. 추 계 결 과 : 2021 ~ 2025년(5년간)사이 세출 20억원 정도 소요
- 라. 재원조달방안 : 도비 1억(5%), 시군 19억(95%)

5. 연도별 비용추계서(세출)

(단위: 천원)

구 분	계	1차년도 (2021년)	2차년도 (2022년)	3차년도 (2023년)	4차년도 (2024년)	5차년도 (2025년)
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사업	2,013,000	380,600	391,600	402,600	413,600	424,600

거창군 맞춤형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20. 11. 27, 거창군수

나. 회부일자 : 2020. 12. 01.

다. 상정일자 : 제253회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
(2020. 12. 9. 상정·의결)

2. 제안설명의 요지 [제안설명자 : 정현수 행복농촌과장]

가. 제안이유

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한 민간 위탁근거를 마련하여 지역의 다양한 활동조직들이 참여하는 효율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하고, 주민주도 마을만들기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함

나. 주요내용

- 자치법규 입안원칙에 따라 용어 및 문장 정비(조례 전반)
- 마을만들기 업무의 위탁근거 마련(안 제20조)
 - 현행) 지원센터 위탁
 - 신설) 마을만들기 업무 위탁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[전문위원 신순화]

- 본 조례안은 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한 민간 위탁근거를 마련하여 지역의 다양한 활동조직들이 참여하는 효율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하고, 주민주도 마을만들기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서

- 주요내용은
 - 조례 전반에 걸쳐 자치법규 입안원칙에 따라 용어 및 문장을 정비하고
 - 안 제20조에는 마을만들기 업무의 위탁근거를 기존 지원 센터에서 마을만들기 업무를 신설하였습니다.

- 검토의견으로는
 - 지방자치법 제104조(사무의 위임 등)에서 “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련 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.”라고 규정하고 있으며,

 - 또 지방재정법 제17조(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)에서 지방자치 단체는 그 소관 사무와 관련하여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인 또는 법인·단체에 기부·보조,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도록 하고

있으며, 이 경우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음.

- 본 조례안을 통해 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한 민간 위탁근거 마련과 지역의 다양한 활동조직들이 참여하는 효율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 됨.

○ 조례와 관련한 형식과 체계상의 문제점,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기재생략

5. 토론요지 : 없음

6. 수정안 요지 : 없음

7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8. 소수의견 요지 : 없음

9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붙임 거창군 맞춤형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거창군 맞춤형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거창군 맞춤형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다음 각 호와”를 “다음과”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“군”을 “거창군(이하 “군”이라 한다)”으로 한다.

제4조제1항 중 “군수”를 “거창군수(이하 “군수”라 한다)”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.

제5조 조 제목 “(다른 법령 등과 관계)”를 “(다른 조례와 관계)”로 하고 같은 조 중 “다른 법령이나”를 “다른”으로 “조례로”를 “조례에서”로 한다.

제7조 조 제목 “(마을만들기 사업)”을 “(사업 및 지원)”으로 하고 같은 조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단일 또는 복합적으로 추진한다.
- ②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추진주체에게 행정지원을 할 수 있으며, 예산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제8조제1항 중 “추진주체가”를 “추진주체가 제7조제2항에 따라”로 한다.

제11조제1항 중 “노력하여야 한다.”를 “하여야 한다.”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

“관련 실과소장”을 “마을만들기 관련 부서의 장”으로 한다.
제16조를 삭제한다.

제2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20조(위탁 운영) 군수는 지원센터 및 마을만들기 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해당 업무를 추진할 능력이 있는 단체나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.

제21조를 삭제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<u>다음 각 호와 같다.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(생략) 2. “주민”이란 <u>군에</u> 주소를 두거나, <u>군에</u> 소재한 사업장 등에 근무하는 사람을 말한다. 3.~4. (생략) 	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<u>다음과 같다.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(현행과 같음) 2. “주민”이란 <u>거창군(이하 “군”이라 한다)</u>에 주소를 두거나, <u>군에</u> 소재한 사업장 등에 근무하는 사람을 말한다. 3.~4. (현행과 같음)
<p>제4조(책무) ① <u>군수</u>는 주민의 마을만들기를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하며 마을만들기에 대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.</p> <p>②~③ (생략)</p> <p>③ 추진주체는 사업의 계획에서 종료까지 모든 과정에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, 그 목적에 따라 사업을 성실히 추진하여야 한다.</p>	<p>제4조(책무) ① <u>거창군수(이하 “군수”라 한다)</u>는 주민의 마을만들기를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하며 마을만들기에 대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.</p> <p>②~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추진주체는 사업의 계획에서 종료까지 모든 과정에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, 그 목적에 따라 사업을 성실히 추진하여야 한다.</p>
<p>제5조(다른 법령 등과 관계)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<u>다른 법령이나 조례에</u>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<u>조례</u>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.</p>	<p>제5조(다른 조례와 관계)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<u>다른 조례에</u>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<u>조례</u>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</p>
<p>제7조(마을만들기 사업) <u>군수</u>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<u>단일 또는 복합적으로</u> 추진한다. 이 경우,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,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로컬푸드 순환기능 강화 사업 2. 문화·복지 활성화 사업 3. 귀농·귀촌 활성화 사업 4. 마을개발 활성화 사업 5. 도농교류 활성화 사업 6. 그 밖에 마을만들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	<p>제7조(사업 및 지원) ① <u>군수</u>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<u>단일 또는 복합적으로</u> 추진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로컬푸드 순환기능 강화 사업 2. 문화·복지 활성화 사업 3. 귀농·귀촌 활성화 사업 4. 마을개발 활성화 사업 5. 도농교류 활성화 사업 6. 그 밖에 마을만들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

	<p><u><신 설></u> ②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추진주체에게 행정지원을 할 수 있으며, 예산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</p>
<p>제8조(지원신청 등) ① 추진주체가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군수에게 서면으로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.</p> <p>② (생략)</p>	<p>제8조(지원신청 등) ① 추진주체가 제7조 제2항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군수에게 서면으로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.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11조(위원회의 구성 등)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특정 성의 위촉직 위원수가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</p> <p>② (생략)</p> <p>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<u>관련 실과 소장</u>이 되고, 위촉직 위원은 주민대표, 전문가 및 마을만들기에 대하여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.</p> <p>④~⑤ (생략)</p>	<p>제11조(위원회의 구성 등)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특정 성의 위촉직 위원수가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.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<u>마을만들기 관련 부서의 장</u>이 되고, 위촉직 위원은 주민대표, 전문가 및 마을만들기에 대하여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.</p> <p>④~⑤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16조(위원의 수당)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과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</p>	<p><u><삭 제></u></p>
<p>제20조(지원센터의 위탁) ① 군수는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단체나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.</p> <p>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,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재위탁할 수 있다.</p> <p>③ 수탁기관은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의</p>	<p>제20조(위탁 운영) 군수는 지원센터 및 마을만들기 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해당 업무를 추진할 능력이 있는 단체나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.</p>

승인을 얻어야 한다.

④ 군수는 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「지방공무원법」 제30조의4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.

⑤ 그 밖에 위탁에 관한 사항은 「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를 준용한다.

제21조(시행규칙)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<삭 제>

거창군 맞춤형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비용추계서

I. 비용추계 요약

1.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

가. 비용발생 요인: 농촌지역개발 신규사업 공모선정에 따른
사업추진을 위한 민간위탁 비용

나. 관련 조문: 제20조(위탁 운영)

2. 비용추계의 결과

(단위: 백만원)

구분	1차년도 (2021년)	2차년도 (2022년)	3차년도 (2023년)	4차년도 (2024년)	5차년도 (2025년)	합 계
군비	120	120	120	0	0	360

3. 관련 의견: 농림축산식품부 신활력플러스사업 선정에 따라
사업추진의 능률성과 전문성을 높이고자 민간위탁 근거 마련

II. 비용추계의 상세 내역

민간위탁 비용: 120백만원

작성자: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오

**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단 사무국 운영
민간위탁 동의안**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20. 11. 27, 거창군수
- 나. 회부일자 : 2020. 12. 01.
- 다. 상정일자 : 제253회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
(2020. 12. 9. 상정·의결)

2. 제안설명의 요지 [제안설명자 : 정현수 행복농촌과장]

- 가. 제안이유
 - 농림축산식품부 신활력플러스사업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지역의 활동조직에서 추진하는 S/W사업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될 추진단 사무국을 사업지침 및 가이드라인에 따라 위탁 운영하기 위함
- 나. 주요내용
 - 신활력플러스 사업개요
 - 사업기간 : 2020년 ~ 2023년(4년간)
 - 위 치 : 거창군 거창읍 대평리 1335번지 일원(10,959㎡)
 - 총사업비 : 7,000백만원(국비 4,900 / 도비 630 / 군비 1,470)
※ 부지매입비 1,500백만원(군비) 별도 편성/부지매입 완료('20.6.)

- 사업내용(사업지침 상 S/W사업비 30%이상 편성 필수)
 - H/W사업(4,900백만원) : 공유가공공장, 공유부엌, 커뮤니티 센터 조성 등
 - S/W사업(2,100백만원) : 신활력아카데미, 로컬푸드육성, 로컬여행활성화 등
- 추진체계
 - 추진위원회 : 추진단장 선임, 사업계획 승인, 사업비 투자결정, 감사
 - 추진단 : 사무국운영, S/W사업 추진, 활동조직 발굴 및 지원
 - 활동조직 : S/W사업 참여, 시설활용 및 운영활성화
 - 행정 : 사업총괄, H/W사업 추진

□ 위탁사무

사무명	주요내용
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단 사무국 운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신활력아카데미 운영(활동조직 발굴·육성) - 신활력공모사업 추진(로컬푸드육성, 로컬여행활성화 등) - 사업비(잠정) : 2,100백만원(S/W사업)

□ 사무국 구성(안)

- 명칭 : 거창군 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단 사무국
- 형태 : 비영리민간단체
- 운영기간 : 2021년 ~ 2023년(S/W사업 완료시까지 탄력적 운영)
- 구성원 : 비상근 1명(추진단장), 상근 3명(사무국장 1, 사무원 2)
- ※ 신활력추진위원회에서 추진단장 선임 및 상근직원 공개채용

○ 소요예산(연간)

계	인 건 비(사업가이드라인)	운 영 비
120,000 (군비)	102,600 - 사무국장 3,000/월 - 사무원 2,100/월 - 4대보험 등 1,350/월	17,400 - 사무집기 임대·구입 - 사무용품 구입 - 전기·통신 요금 등

※ 추진단장 활동비는 신활력 사업비(국비)에서 월 200만원 이내 지급가능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[전문위원 신순화]

- 본 동의안은 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단 사무국(지역의 활동조직에서 추진하는 S/W사업 지원 역할 수행)을 사업지침 및 가이드라인에 따라 위탁 운영 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서
- 「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(민간위탁 대상 사무의 기준등)에 따르면 군수는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사무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군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단순사실행위인 행정작용,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,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, 그 밖에 시설관리 등 군민생활과 직결된 단순행정사무는 민간위탁 할 수 있으며, 자치사무인 경우 군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음.
- 아울러,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사무국 운영 업무는 전문지식과 능률성을 요하는 사무에 해당됨.

- 효율적인 운영과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단 사무국을 민간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, 관련 규정상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기재생략

5. 토론요지 : 없음

6. 수정안 요지 : 없음

7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8. 소수의견 요지 : 없음

9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공용건축물(가조119안전센터) 증축 동의안 심사보고서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20. 11. 27, 거창군수
- 나. 회부일자 : 2020. 12. 01.
- 다. 상정일자 : 제253회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
(2020. 12. 9. 상정·의결)

2. 제안설명의 요지 [제안설명자 : 장봉기 안전총괄과장]

- 가. 제안이유
 - 가조119안전센터 청사는 가조면 마상리 467-6번지 거창군 소유 토지에 위치한 경상남도 소유 건물로 청사 노후 및 소방인력 증가 등으로 협소한 청사 공간을 개선하기 위하여 지상 2층의 건물을 증축하기 위하여 무상사용 요청한 것으로
 -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제13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청사증축을 통해 소방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군민안전을 도모하기 위함

나. 주요내용

□ 가조119안전센터 현황

○ 청사현황

- 토지(소유 : 거창군) : 가조면 마상리 467-6, 대지, 1,026m²
- 건물(소유 : 경남도) : 철근콘크리트조, 2층, 연면적 408.95m²

○ 운영현황

- 관할지역 : 3개면(가조면, 가북면, 남하면)
- 면 적 : 212km²(거창군 전체의 26.4%)

○ 그간 추진내역

- 2005년 지역대 정원규모로 신축
- 2010년 안전센터 승격 후 공간 협소로 2013년 1층과 2층 증축
- 2016년 행정 수요의 증가로 물탱크 차량 공간과 적재공간 증축
- 2020년 청사 노후 및 소방인력 증가 등으로 증축 협의 요청

□ 증축계획

- 증축규모 : 266.8m² / 지상 2층(1동) / 철근콘크리트조
- 사 업 비 : 1,061,726천원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[전문위원 신순화]

- 본 동의안은 청사 노후 및 소방인력 증가 등으로 협소해진 가조119안전센터 청사 공간을 개선하기 위한 사항으로서
-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24조(사용료의 감면)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“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해당

행정재산을 공용·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”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으며,

-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」 제9조(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)에서는 “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5조제2항제1호의 공용재산에 해당되는 건축물을 축조하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장 간에 서로 합의하고 해당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”에는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.

- 따라서 소방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군민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는 가조119 안전센터 증축은 꼭 필요한 사항으로 동의함에 따른 관련규정상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기재생략

5. 토론요지 : 없음

6. 수정안 요지 : 없음

7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8. 소수의견 요지 : 없음

9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**거창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
민간위탁 동의안**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20. 11. 27, 거창군수
- 나. 회부일자 : 2020. 12. 01.
- 다. 상정일자 : 제253회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
(2020. 12. 10. 상정·의결)

2. 제안설명의 요지 [제안설명자 : 이덕기 환경과장]

가. 제안이유

거창군 생활폐기물소각시설의 민간위탁 운영기간이 2020년 12월말에 종료됨에 따라, 「폐기물관리법」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각시설을 전문적인 기술능력을 보유한 민간 업체에 위탁 운영하기 위함

나. 주요내용

- 1) 시 설 명 : 거창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
- 2) 위 치 : 거창군 거창읍 심소정길 139-7

3) 시설현황

시설용량	처리방법	위탁기간	연면적	운영업체	비고
30톤/일	열분해 가스화방식	2018. 1. 1.~ 2020.12.31.(3년)	1,855㎡ (3층,철골)	〈공동수급〉 환경시설관리(주), 화성종합건설(주)	관리인력 18명

4) 위탁대상 사무 :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의 전반적인 운영·관리

- 소각시설의 운전 및 유지관리 업무(24시간 운영)
- 소각시설 내외의 환경정비, 환경오염물질 기준이내 배출
- 소각시설 내외 전기설비 및 급배수 설비관련 업무
- 안전관리 및 내구연수 증대 방안 도출

5) 위탁기간 : 2021. 1. ~ 2023. 12. 31.(3년)

※ 기존 위탁기간 : 2018. 1. 1. ~ 2020. 12. 31.(3년)

6) 계약갱신 근거 및 검토결과

- 거창군 환경기초시설(소각장포함)운영 관리대행 사업 협약서 제4조(관리대행기간 및 협약 변경)
 - 대행성과 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5년의 범위 내에서 갱신 가능
- 현 수탁업체를 갱신하여 운영할 경우 그간 축적된 노하우와 기술력을 토대로 원활한 운영이 가능함.
 - 관리운영상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해 신속하고 적절한 위기 대처 가능
 - 대기배출시설 배출허용기준(32개항목) 준수 등 법적 관리 대응능력이 유리함.
 - 지속적인 시설물 개선과 관리가 용이함.
 - 시설운영관리 전반에 있어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함.

7) 위탁업체 선정 : 기존 수탁업체(공동수급)와의 ‘계약갱신’

8) 소요예산 : 1,796백만원 정도/년

9) 향후계획

- 2020. 12. : 민간위탁 군의회 동의

- 2021. 1. : 시설운영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[전문위원 신순화]

- 본 동의안은 거창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을 전문적인 기술능력을 보유한 민간 업체에 위탁 운영코자 하는 사안으로서
- 「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(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등)에 따르면 군수는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사무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군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단순사실행위인 행정작용,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,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, 그 밖에 시설관리 등 군민생활과 직결된 단순행정사무는 민간위탁 할 수 있으며, 자치사무인 경우 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음.
- 생활폐기물소각시설 운영은 시설관리 등 군민생활과 직결된 단순행정사무에 해당되며, 효율적이고 원활한 시설 운영을 위해 거창군 생활폐기물소각시설 민간 위탁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음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기재생략

5. 토론요지 : 없음

6. 수정안 요지 : 없음

7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8. 소수의견 요지 : 없음

9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